

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05. 2. 25(금)

관광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12월 14일 정상혁 의원외 8인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14일

다. 상정일자 : 제236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 (2005. 2. 23)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 및 의결

2. 제안설명

(제안설명자 : 도의원 정 상 혁)

가. 제안이유

○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규인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(2000.8.23)되어
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시내(농어촌)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
운송사업자로 명확히 구분하고(제2조, 제4조)
○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제87조 내지 제92조가
2000. 8. 23 삭제되면서 제41조의5 내지 제41조의 8
조항으로 신설됨에 따라 정비(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박 일 수)

-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-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제87조 내지 제92조가 2000. 8. 23 삭제되면서 제41조의 5 내지 제41조의 8조항으로 신설됨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

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붙임 서류

-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4년 12월 14일

발 의 자 : 정상혁 의원외 8인

□ 제안이유

-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(2000. 8. 23)되어 정비가 필요한 일부조문을 개정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시내(농어촌)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로 명확히 구분하고(제2조, 제4조)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제87조 내지 제92조가 2000. 8. 23. 삭제되면서 제41조의5 내지 제41조의8 조항으로 신설됨에 따라 정비(제9조)

□ 참고사항

-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- 관계법령 : 따로붙임

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, 제4호 및 제4조제3호중 “시내(농어촌)버스운송사업”을
“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”으로 한다.

제9조중 “제87조 내지 제92조”를 “제41조의5 내지 제41조의8”로
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조문대비표

관계법령 발췌

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제41조의5 (손실보상금청구서등)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손실보상금청구서에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운행사실기록부 및 별지 제23호의 5서식의 손실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본조신설 2000.8.23>

제41조의6 (손실보상금의 산출 등) ① 영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다.

손실액(1일)=1킬로미터당 운임×A×(B - 실제승차인원)×운행횟수

A :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노선(이하 "명령노선"이라 한다)의 운행거리(킬로미터)

B : 운송사업자가 운임·요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으로 삼은 평균승차인원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승차인원 및 운행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.

1. 실제승차인원 : 시·도지사가 당해 명령노선별로 매년 교통량을 조사하여 산출한 1킬로미터당 1회 평균수송인원
2. 운행횟수 : 명령노선의 종점이 있는 행정구역의 동장 또는 이장이나 동장 또는 이장이 지정한 주민이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운행사실기록부에 명령노선을 운행한 것으로 기록한 횟수(버스가 명령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가 이를 조사·확인한 후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횟수를 공제한 횟수)

<본조신설 2000.8.23>

제41조의7 (손실보상금 청구액의 조정 등) ① 시 · 도지사는 영 제12조의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운송사업자의 손실보상금청구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 · 도지사는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명령노선의 교통량을 조사할 수 있다.

② 시 · 도지사는 청구된 손실보상금이 분기별 예산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기별 예산의 범위안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 시 ·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분기에 그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.

<본조신설 2000.8.23>

제41조의8 (손실보상대상노선의 제외등) ① 시 · 도지사는 수송인원의 증가 등 수송여건이 호전되어 명령노선에서 손실이 발생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명령노선을 즉시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버스노선(이하 "손실보상대상노선"이라 한다)에서 제외시켜야 한다.

② 시 ·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대상노선에서 제외된 명령노선을 계속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인원의 감소 등 수송여건이 악화되어 다시 손실을 보게 된 때에는 그 명령노선을 다시 손실보상대상노선으로 할 수 있다. <본조신설 2000.8.23>

제87조 내지 제92조 삭제 <2000.8.23>